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73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헌승·조경태·임이자

박덕흠 · 성일종 · 김 건

서범수・박성훈・강명구

곽규택 · 송석준 · 김선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시행령은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국가보훈등록증 발급의 근거를 두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이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경우 국가보훈등록증을 통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임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하여 부당하게 이용요금을 할인 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어 이를 부정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을 두 지 못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정하는 한편, 국가보훈등록증을 부정사용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부정사용을 막고, 중 ·장기복무제대군인에 대한 지원이 중·장기복무제대군인에게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으로 결정 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 하 같다)을 발급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 증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 1. 국가보훈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국가보훈등록증이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 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
 -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 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등 록증의 발급·재발급·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

제28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대군인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제외한다.
- 3. 제24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정지된 기간 동안 국가보훈 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보훈등록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국가보훈등 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국가보훈등록 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연 생 <u><신 설></u>	제4조의2(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등)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 조제2항 전단에 따라 장기복무 제대군인 또는 중기복무 제대 군인으로 결정된 사람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1. 국가보훈등록증의 제발급을 신청할수 있다. 2. 성명, 생년월일 등 국가보훈등록증의 기재사항 중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변경된 경우
	③ 국가보훈등록증은 양도하거

<신 설>

제28조(벌칙) ① • ② (생 략)

<신 설>

<u>나 대여하지 못하며, 국가보훈</u> 등록증과 유사한 명칭이나 표 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6조의 3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의 진위 또는 유효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확인하여 줄 수 있다.
- ⑤ 그 밖에 국가보훈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한 다.

제26조의3(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 보훈등록증의 발급·재발급· 진위확인 등을 위하여 정보시 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28조(벌칙) ① · ② (현행과 같음)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1. 제4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국가보훈등록증을 양도·대

 여하거나 양도·대여를 받은

 사람 및 유사한 명칭 또는

 표시를 사용한 사람

- 2. 다른 사람의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하거나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대군인이이 비에 따른 지원을 받을 권리가 소멸된 이후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다만 제25조제2항에 따라 이법의 적용 대상자로 결정된사람은 제외한다.
- 3. 제24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이 정지된 기간 동안 국 가보훈등록증을 사용한 사람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③ (생략)